

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!
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
국민의힘 마포구 제1선거구 이민석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.
- 도로관리청이 보행환경개선사업 및 도로공간재편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보도가 확장되는 경우,
인근 건물의 차량 진출입로 등 기존 도로점용 허가 면적이 시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증가하여 시민이 부담해야 할 점용료가 상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
- 이에 공공사업 추진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증가한 면적에 한하여 진입로·출입로의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요율을 합리적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,
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공공사업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운영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